

행정처분·행 정감독 및 안전관리 사 항

2018. 03. 00

출제포인트

- 이 섹션에서는 예방규정, 정기점검, 자체소방대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처분과 출입 검사에 관한 내용도 눈여겨보도록 한다.
- 벌칙과 과태료 부분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 모두 실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행정처분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 과징금 처분
 - 다음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위의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 ❖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행정감독

• 출입 · 검사 등

-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 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 ❖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감독

• 출입 · 검사 등

- 출입 · 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행해야 한다.
 - ❖ 예외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출입 · 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 시험기구 · 장부 ·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출입 · 검사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출입 · 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감독

- 각종 행정명령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감독

- 각종 행정명령
 -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감독

- 각종 행정명령
 -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위 ①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 ①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①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 ①의 규정의 예에 따라 ①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감독

-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변경허가 없이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 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저장 · 취급기 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예방규정

-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예방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방규정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예외

-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 1 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 예방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 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

- 예방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점검

• 정기점검 대상

-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 구조안전점검
 - ❖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의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구조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정기점검

- 정기점검의 횟수 : 연 1회 이상
- 정기점검 실시자
 - 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 입회하에 해야 함)
- 정기점검의 기록사항
 -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점검연월일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 정기점검기록 보존기간
 -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정기검사

- 검사 대상
 -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 중에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검사 내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 검사 시기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체소방대

- 설치대상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설치 제외대상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체소방대

-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 할 것
분말 방사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분말의 방사능력이 매 초 35kg 이상일 것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 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이상 비치할 것

안전교육

• 교육의 의무

-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 ·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대상자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안전교육

-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기출 문제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는? (13-01)
① 100배 이상 ② 150배 이상 ③ 200배 이상 ④ 250배 이상

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하여 년간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단, 구조안전점검 외의 정기점검인 경우이다.) (14-02)
① 1회 ② 2회 ③ 4회 ④ 6회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 · 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5-01)
①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④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기출 문제

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가? (13-04)
- ① 1000 ② 2000 ③ 3000 ④ 5000
5.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5만배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14-02)
- ① 1대, 5인 ② 2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6.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기준은 ? (07-02)
- ① 1대 ② 2대 ③ 3대 ④ 4대

기출 문제

7.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09-04)

- ① 1/3
- ② 2/3
- ③ 1/5
- ④ 2/5

8.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10-01)

- ① 포수용액 방사능력 : 2000L/min 이상
- ② 분말 방사능력 : 35kg/s 이상
- ③ 이산화탄소 방사능력 : 40kg/s 이상
- ④ 할로겐화합물 방사능력 : 50kg/s 이상

Thank you